

의안번호	2218319
의 퇴 인	윤종오의원
회 답 일	2026.9.1.
추계번호	26D1237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매년 4억 8,600만원, 총 14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구성(안 제8조)	486	486	486	1,458	486

주: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 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2	안 제6조(미등기 사정토지 위원회의 설치) 안 제12조(이의신청 등)	미등기 사정토지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군·구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와 광역시·도에 광역시·도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를 두며, 시·군·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광역시·도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약칭: 시·군·구 위원회 및 광역시·도 위원회)	의무규정
	안 제8조(미등기 사정토지 위원회의 구성) 안 제10조(사정토지위원회의 활동기간)	사정토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을 마친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1조(사정토지 대상의 확정 및 고시)	사정토지위원회는 미등기 사정토지 대상을 확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간 신문 및 해당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 이상 고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9조(소유권의 반환 및 손실보상)	토지소유자 등은 미등기 사정토지가 국가로 귀속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확정판결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소유권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국가로 귀속된 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손실보상에 우선 사용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안 제6조(사정토지위원회의 설치) 안 제8조·제10조(사정토지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안 제12조(이의신청 등)	○	—
3	안 제11조(사정토지 대상의 확정 및 고시)	—	고시대상이 되는 사정토지의 확정이 곤란하여 일간신문 등 고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안 제19조(소유권의 반환 및 손실보상)	—	국유로 된 미등기 사정토지 중 소유권을 반환할 수 없어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토지규모를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정토지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함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범위는 대법원의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를 따름
 - 제2조1)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인 위원은 자기가

1)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위원은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참석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함

- 변호사, 법무사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명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20만원으로 함
- 회의참석수당 단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추계기간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사정토지위원회의 회의 1회당 처리 건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545건으로 가정하고, 현재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63만 필지와 재심사를 하는 광역시·도 사정토지위원회를 제외한 시·군·구 사정토지위원회의 수를 적용하여 사정토지위원회의 연간 회의 개최 횟수는 5회로 가정함

○ 2026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227개, 광역자치단체의 수는 16개임

[표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회의 1회당 심리·의결 사건 수: 2020~2024년
(단위: 건)

구분	심리·의결				회의횟수	심리·의결 (회의당)
	계	(일부)인용	기각	각하		
2020	22,727	1,573	16,783	4,371	45	505
2021	18,873	1,710	14,892	2,271	45	419
2022	21,159	1,468	15,581	4,110	45	470
2023	27,887	1,247	15,994	10,646	38	734
2024	19,357	964	15,051	3,342	29	667
평균	22,001	1,392	15,660	4,948	40	54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광역시·도 사정토지위원회의 연간 회의 개최 횟수는 시·군·구 사정토지위원회와 동일하게 5회라고 가정함

□ 제정안 사정토지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년이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각 위원회별 민간위원 수에 연간 회의횟수, 회의참석수당 단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수를 곱하여 추계함
- 시·군·구 사정토지위원회와 광역시·도 사정토지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각각 다음과 같음

[표 3] 시·군·구 사정토지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29년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군·구 미등기 사정토지 위원회	민간위원(명)	2	2	2	—	—
	회의횟수(회)	5	5	5	—	—
	수당단가(백만원)	0.2	0.2	0.2	—	—
	기초자치단체의 수(개)	227	227	227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454	454	454	1,362	454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 광역시·도 사정토지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29년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광역시·도 미등기 사정토지 위원회	민간위원(명)	2	2	2	—	—
	회의횟수(회)	5	5	5	—	—
	수당단가(백만원)	0.2	0.2	0.2	—	—
	광역자치단체의 수(개)	16	16	16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32	32	32	96	32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에 따라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매년 4억 8,600만원, 총 14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29년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미등기 사정토지 위원회	시·군·구 미등기 사정토지 위원회	454	454	454	—	—
	광역시·도 미등기 사정토지 위원회	32	32	32	—	—
	합계	486	486	486	1,458	486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 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